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인 지 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폐지된 타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인지세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현금납부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폐지된 타법 인용조문 정비(안 제6조의2)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공사채등록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나. 현금납부 및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규정 정비(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인지세 납부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인지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8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인용하는 현금납부 및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 19. ~ 2.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3. 「은행법」 제33조의5에 따라 등록된 사채등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단서”로, “세무서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세무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즉시”를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의2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거나
인지세 현금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현금납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지세 현금납
부를 신청한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문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의2(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 ----- <u>대통령령</u> ----- ----- ----- ----- ----- -----.
1.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객계좌부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등록된 전자단기사채등	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공사채등록법」 제9조에 따른 공사채등록부에 등록된 공사채	3. 「은행법」 제33조의5에 따라 등록된 사채등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11조(현금납부)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과세문서명, 납부세액, 납부방	제11조(현금납부) ① ----- -- 단서----- ----- -----

세무서장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단서 삭제>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법 제8조제2
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23